

<p>仁川市, 그리고 京畿道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집행기관인 사무국과 3공구기반시설조성사업단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조합회의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의 관련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기에 地方自治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同 變更規約同意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행정사무 및 조사권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고, 조합회의는 매년 1회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10월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5일 범위내에서 실시하고,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합회의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.</p> <p>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추진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同 變更規約同意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.</p> <p>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,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文一權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組合規約中變更規約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동의 없습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을 별첨과 같이 동의한다.</p> <p>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</p>	<p>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</p> <p>조합규약 제2장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9조(조합회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) ①조합회의는 매년 1회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10월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 ②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. ③조합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합회의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현행규약 제2장의 제9조를 제10조로, 제10조는 제11조로, 제3장의 제11조는 제12조로, 제12조는 제13조로, 제13조는 제14조로, 제4장의 제14조는 제15조로, 제15조는 제16조로, 제16조는 제17조로, 제17조는 제18조로 하고, 제5장의 제18조는 제19조로, 제19조는 제20조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규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12. '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(水資源管理委員會所管)(서울特別市長 提出) (14時 51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水資源管理委員會 소관 '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을 상정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水資源管理委員會 金平洛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平洛議員 평소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, 그리고 先輩·同僚議員님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</p> <p>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5선거구 출신 金平洛議員입니다.</p> <p>'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</p> <p>먼저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현재 서울市 수도자재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中區 興仁洞 131번지 토지 및 건물을</p>
---	--